(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0440호

2023년도 「R&D 기획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R&D 기획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으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자체 연구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연구개발 기획 촉진

□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32개 과제 내외, 총 230백만원 지원
 - 10,000천원, 7,000천원, 5,000천원 / 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급
- **신청방식**: 자유 응모, 기업을 주관으로 하되 연구자나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지원 기간: 협약 기간 이내

2. 지원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2023년 정부부처 R&D 공모과제 지원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컨설팅)기관,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필요 제출서류
1)	기획기관 활용 (컨설팅 기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타당성·시장성 조사	기획기관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명부
2	전문가 활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지원 등	전문가 프로필 (전문가 자격 기준 참고)

[※] ①,② 중 택1 또는 모두 선택 가능(신청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 편성)

□ 지원범위

사업비 사용기준	비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동향 조사보고서 구입비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기관" 위탁비 ※ 기획기관: 정부 지원사업의 공통적인 목차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기관 	- 전문가 활용비 - 시장·기술 동향 조사 구입비 - 기획기관 위탁비 이외에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획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으로 경영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관련 유사 종목이 반드시 명기 되어 있어야 하며,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함

□ 지원 형태

○ 예산편성은 지원범위 사용기준 내에서 자율적 편성

□ 지원 대상(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 협약 기간 내 **본사를** 경남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② 본 사업 협약 이후 2023년도 정부부처 R&D 지원사업 신청 예정인 중소기 업
 - * 지원연도 정부부처 R&D 지원 시업 신청 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공공연구기관 및 타 기업과 공동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세부 주관까지는 인정됨
 - * 타 정부부처 기관 컨설팅(코칭), 바우처, 특허분석과제(IP나래, 지재권분쟁, IP R&D 등) 등의 과제 지원은 불인정

□ 평가기준

- **평가 기준**: 선정평가 세부 항목 참조
-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대면 평가(발표평가) 시행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
 - * 코로나19 시태와 관련하여 대면 평가는 서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필요성 (10)	1. 기획의 필요성	▪개발기술의 기획 필요성	
기술성	0 기스이 카버서 미 그래서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지 = 8 적정성·	2 기술의 치별성 및 구체성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타당성	
개발역량	3. 개발목표의 적정성 • 기획 기술개발 목표 수준의 적정성		
(60)	4. 기술의 개발역량 • 기획 기술의 개발역량		
	5.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포함)	■ 기획 기술의 시장규모 및 목표시장의 타당성	
사업성 (30)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수출 가능성	
	6. 고용 친화도	■ 고용계획 및 효과(신규 고용 및 유지 계획)	

□ 지원 절차

	절 차	주 체	일 정
1	시행계획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2022 12 19. ~ 2023 1.6.
	\Box		
2	지원신청서 접수	온라인 서류제출 : http://gntp.or.kr 원본 서류제출: 제출처 참고	2022 12 19. ~ 2023. 1. 6.
	\Box		
3	사전검토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Box		
4	평가위원회 개최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Box		
(5)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경남테크노파크 → 신청기업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Box		
6	최종선정, 협약체결	선정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Box		
7	사업수행	선정기업	협약기간 이내
	\Box		
8	중간 모니터링	경남테크노파크	상시
	\Box		
9	최종 결과물 및 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
	\Box		
10	사업비 지급	경남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자격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4주일 이내

3.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 및 공동 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선 개발 및 선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선 개발 또는 선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선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선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 제품· 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공동 개발기관, 공동 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주관기관과 기획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 인력을 포함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21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 따름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2. 12. 19.(월) ~ 2023. 1. 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원본 1부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원본 제출, 원본서류는 마감기한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 양식: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다운로드

○ 신청 서류: 하기 항목 참조

구분	제출서류목록		비고
	① 온라인 접수증		사본
	② 사업계획서 1부		지정양식사용, 도장날인 원본 (도장 스캔본 불가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⑥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⑦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
	⑧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⑩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홈택스 출력본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① 기획기관 활용 경우 (주관기업, 기획기관)	⑪-1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확인용)	
신청 프로그램		⑪-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에 따라 제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⑩ 전문가 활용 경우	(1) 연구자(전문가) 프로필(자유양식)※ 시업비 편성 시, 전문가 활용비를 편성해 놓은 경우에 한함	사본

※ 기획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①번의 서류제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②번의 서류제출, 기획기관과 전문 가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 ①번과 ②번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위·변조 및 누락, 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등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접수 및 문의처

부서(팀)	성명 / 직위	연락처	이메일
기업지원단	박유안 전임연구원	055-259-3478	yuan3717@gntp.or.kr
(기술사업화팀)	신대용 연구원	055-259-3476	dyshin@gntp.or.kr
접수처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03-1호,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박유안 전임연구원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 https://www.gntp.or.kr/biz/apply